

의안 번호	922	【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】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08. 29(수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8. 29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9. 07(금)

## 2. 제안(폐지)설명 요지

- 지방공무원법 개정(2011.5.23, 시행 2011. 8.23)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  - ※ 2004.11.11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. 2. 2일자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하여 고용직 공무원은 없음.

## 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「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.

## 4. 폐지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- 마.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부

## 6. 검토의견

지방공무원법 개정(2011.5.23, 시행 2011. 8. 23) 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